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10. 11.(금)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관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존 관사의 노후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임차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교직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자.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안 이유 검토

- 본 조례안은 기존의 관사 운영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노후화, 단체생활형 관사 구조 등에 따른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임차비를 지원하여 주거 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 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도내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인사 발령 후, 1달 이내에 발령지의 주거를 마련해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용 후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 의원면직의 원인인 낮은 처우와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발령으로 주택 임대를 위한 비용 마련 부담도 영향을 끼침
-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전지역에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를 원하는 공무원의 수에 비해 관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지 거주 어려움이 더해짐

<2022~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역별 관사 입주자 대기 현황>

지역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괴산 증평	소계
입주 신청자	2022	27	91	104	31	62	110	33	39	41	22	560
	2023	7	297	132	42	65	102	49	20	41	27	782

	2024	6	200	145	33	58	94	44	22	40	24	666
관사 입주자	2022	27	22	16	6	42	67	4	5	40	5	234
	2023	7	68	16	36	43	58	4	3	40	8	283
	2024	6	46	18	33	43	58	7	4	40	5	260
입주 대기자	2022	0	69	88	25	20	43	29	34	1	17	326
	2023	0	229	116	6	22	44	45	17	1	19	499
	2024	0	154	127	0	15	36	37	18	0	19	406

-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관사는 단체 생활형 관사의 형태로 개인의 주거 패턴이 변화되어 개인형 관사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LH 협약을 맺고 임차를 통해 임대아파트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충북 도내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임대아파트 지원의 어려움이 있음. 비슷한 지역적 환경의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설치하여 주거안정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타 시도 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관련 조례>

연번	시·도	조례명	제·개정일
1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2.4.21. 일부개정 (1998.1.12. 제정)
2	전북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2021.10.28. 일부개정 (1994.7.11. 제정)
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4.6.7. (제정)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 전체 지역 발령으로 이동이 많은 교육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의 업무의 안정성 확보와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존속기한,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과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관계공무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함을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하기로 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1인당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매년 기금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¹⁾에서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²⁾에서는 농어촌 교직원에게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관사의 안정적 공급의 부족과 기존 관사의 노후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 증진과 근무지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로써 입법의 취지,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비추어

1) 1)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찰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7. 23.]

불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 다만, 제9조에서 지원대상이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자로서 근무지의 관사 및 주택 수급의 정도에 따라 경력별, 지역별, 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등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며, 지원금의 안정적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규정해야함